

<附 錄>

附錄 1

- 現行 預金者保護法上 金融圈別 預金保護 實態
< 金融商品 元利金 支給保障 內容：預金者保護法 施行令 >

附錄 2

- 金融圈別 預金保險料 納付基準
 - o 保險會社
 - o 銀行
 - o 綜合金融會社

附錄 3

- 保險會社 支給餘力 基準
 - o 損害保險
 - o 生命保險

附錄 4

- 保險會社 經營實態評價

附錄 5

- 美國의 各州別 預金保險基金 制度 運用 現況
 - o 損害保險 保證基金
 - o 生命保險 保證基金

[附錄 1] 金融商品 元利金 支給保障 內容 < 預金者保護法 施行令 >

구 분	예금상품	예금보호여부		
		98.7.31일 이전 가입분 ~ 2000년말	98.7.31일 이후 가입분 ~ 2000년말	2001년이후
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원리금 2,000만원까지 보장
	외화예금, CD, 금융채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보장제외
	환매채	원리금보장(98.6.30이전 가입분)	보장제외	보장제외
은행신탁	확정금리형 원본보존신탁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원리금 2,000만원까지 보장
	개발신탁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보장제외
	실적배당신탁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장제외
종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담보CP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원리금 2,000만원까지 보장
	RP, 수익증권, 무담보CP, 종금채	원리금보장	보장제외	보장제외
증권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원리금 2,000만원까지 보장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 담보금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보장제외
	환매채	원리금보장(98.6.30이전 가입분)	보장제외	보장제외
	수익증권, 무담보CP, MMF, 증권채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험	개인보험, 퇴직보험	해약환급금기준 전액 보장(98.6.30이전 가입분)	수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중 적은 금액	해약환급금기준 2,000만원(98.7.24이전가입분은 5,000만원까지)
	법인보험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보장제외
	보증보험	원리금보장	보장제외	보장제외
신금, 신탁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출자금, 예탁금, 적금	원리금보장	2,000만원이상은 원금만 보장	원리금 2,000만원까지 보장
투신	수익증권, MMF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장제외
새마을 금고	출자금, 예탁금, 적금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장제외
회사채	보증보험보증	원리금보장	보장제외	보장제외
	은행보증, 기타보증, 무보증회사채	보장제외	보장제외	보장제외

[附錄 2] 金融圈別 預金保險料 納付規定

■ 보험회사의 보험료납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2호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개정 98.12.18>
2. “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를 말한다. 다만, 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제외한다.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98.12. 18]

가.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 : 보험의 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업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신설 98. 12.18]

나.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 다음의 금액

- (1)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 (2)지급할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정 보험금

(3)보험금등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그 소송가액

[신설 98.12.18.]

다.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의 승인을 얻은 금액 [신설 98.12.18]

제4조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의 범위)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과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
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인 보험계약(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
험계약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개정 98.12.18>

1.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이외 보험계약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
임준비금 <개정 98.12.18>

2.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 <개정 98.12.18>

3.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 <개정 98.12.18>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5.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6.다른 부보금융기관

제2장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제5조 (보험료의 산정단위) 보험료는 사업년도 단위로 산정한다.

제6조 (보험료의 산정)

①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산정대상기간이 사
업년도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보험료 =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의 잔액 × 보험료율 <개정 98.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
로 한다.

제7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보험료율은 15/10,000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②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설립후 10년이 경과하

지 않은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15.75/10,000로 한다.

-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보험회사로서 누적결손이 없는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보험료율 = $15/10,000 - [(실제적립준비금 - \text{해약환급금} \text{식 준비금}) / (\text{순보험료} \text{식 준비금} - \text{해약환급금} \text{식 준비금})] \times 0.75/10,000$

- ④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로서 누적결손이 없는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보험료율 = $15/10,000 - [5 - \text{연간보유보험료총액} / \text{보험계약자잉여금}] \times 1/3] \times 0.75/10,00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율은 최고 15/10,000, 최저 14.25/10,000로 한다.

-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15/10,000를 적용한다.

- ⑦ 보험료율은 소숫점 8자리에서 사사오입한 소숫점 7자리까지로 한다.

제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보험회사 보험료를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월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기한으로 한다.

제9조 (보험료의 납부방법)

- 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이체(지준이체 포함)의 방법으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는 “천원” 미만을 절사한다.

제3장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제10조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 ① 보험회사는 제11조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정자료를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정자료외에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공사의 사장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료 산정자료)

- ① 보험료 산정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료 산정표
 - 2.보험종목별 책임준비금의 잔액이 기재된 사업년도말 자료 <개정 98.12.18>
- ②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 산정표의 서식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사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과납 또는 미납보험료의 처리

제12조 (과납보험료의 정산)

- ①보험료를 과납한 보험회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납한 보험료를 정산한다.

제13조 (미납보험료의 처리)

보험회사가 제8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와 부족하게 납부한 보험료(이하 “미납보험료”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 1.보험회사는 미납보험료와 제14조에서 정한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2.보험회사는 제1호의 금액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후 그 납부명세를 문서로써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연체료)

- ①연체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연체료} = \text{미납보험료} \times \text{연체이자율} \times \text{납부지연일수} / 365\text{일}$$
- ②연체이자율은 보험료 납부기일 현재의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평균 연체이자율로 한다.
- ③납부지연일수는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미납보험료의 납부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 ④연체료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합병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

제15조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등으로 보험료 납부등)

- ①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한 경우 신설되는 보험회사(이하 “신설보험회

사”라 한다) 또는 존속하는 보험회사(이하 “존속보험회사”라 한다)의 보험료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설보험회사 또는 존속보험회사는 합병전후의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 산정자료를 작성한다.
 2. 신설보험회사 또는 존속보험회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험료 산정자료를 제10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설보험회사 또는 존속보험회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의 합계액을 제8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보험회사가 계약이전등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등을 이전하고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등을 이전하는 보험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계약등을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보험료 납부기한등의 연장)

- ① 합병으로 소명하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등을 이전하는 보험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관련하여 신설보험회사, 존속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등을 이전받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등의 승계 또는 이전절차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당해 보험료에 대한 납부 및 산정자료의 제출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동기한의 연장을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기한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에 한한다)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은 1998년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2호 단서(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4조제1호(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인 보험계약중 보증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다)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8.12.18>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보험감독원의 보험보증기금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한다)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출연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운영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출연금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가 운영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에 납부한 출연금은 이 규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제4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보대상 수입보험료는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제외한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로 하여<별표1>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는 이 규정 시행후 2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 산정자료는 이 규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부보대상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등)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1998년 7월 31일 현재 계약의 효력이 있는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보대상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포함되며, 보험료는 <별표2>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개정 98.12.18>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199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한다.

보험료=1998사업년도말 수입보험료의 총액×138일/365일×개별보험회사의 보험료율+ 1998사업년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197일/365일×개별보험회사의 보험료율

<별표1>

1997년도분 보험료의 계산

1.보험료의 계산

-보험회사(보증보험회사 제외)

: 부보대상수입보험료의 총액×개별 보험회사 적용보험료율 <1997.4.1. ~ 1997.11.18>×232일/365일+ 부보대상수입보험료의 총액×개별 보험회사 적용보험료율<1997.11.19 ~ 1998.3.31>×133일/365일

2.보험료율의 적용

<1997.4.1 ~ 1997.11.18>

- 1998.4.1 기준으로 설립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보험료율 : 0.5/10,000

- 1998.4.1 기준으로 설립후 10년이 경과한 인보험회사로서 누적결손이 없는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보험료율=10/10,000-[(실제적립준비금-해약환급금식 준비금)/(순보험료식 준비금-해약환급금식 준비금)]×0.5/10,000

- 1998.4.1 기준으로 설립후 10년이 경과한 손해보험회사로서 누적결손이 없는 보험회사의 보험료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보험료율=10/10,000-[(5-년간보유보험료총액/보험계약자잉여금)×1/3]×0.5/10,000

※보험료율:최고 10/10,000, 최저9.5/10,000

- 그외의 보험회사의 보험료율 : 10/10,000

※보험료율은 소숫점 8자리에서 사사오입한 소숫점 7자리까지로 함.

<1997.11.19 ~ 1998.3.31>

-제7조를 적용하여 계산

<별표2>

사업년도별 보증보험회사의 보험료의 계산

1. 1998 사업년도

-1998사업년도말 수입보험료의 총액(1998.7.31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 한함) \times 168일/365일 \times 개별보험회사의 보험료율+ 1998사업년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1998.7.31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 한함) \times 197일/365일 \times 개별보험회사의 보험료율

2. 1999 사업년도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의 잔액(1998.7.31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잔액) \times 보험료율

3. 2000사업년도

-부보대상 책임준비금의 잔액(1998.7.31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잔액) \times 보험료율 \times 275일/365일

<별지 제1호 서식>

보험료산정표(인보험회사)

(연도)
보험회사(인)

● 납부보험료 : 원 ●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의 잔액 (단위 : 원)			
보험종목	규정 제3조 제4호상책 임준비금잔액①	부보대상제외책임준 비금잔액②	부보대상책임준비금 잔액 (①-②)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			
단체보험			
합 계			a

표 41

●보험료율

(단위 : 원)

실제적립준비금(A)	계약환급금식준비금(B)	순보험료식 준비금(C)	보험료율⑥
------------	--------------	--------------	-------

주1 : 1.보험료율= 표준비율(15/10,000)-[(A-B)/(C-B)*(표준비율*5/100) 2.보험료율 : 최고 15/10,000,최저 14.25/10,000(단,10년 미만 보험회사는 15.75/10,000)
--

●당해사업년도 보험료

(단위 : 원)

부보대상책임준비금잔액①	보험료율⑥	당해사업년도보험료(①*⑥)
--------------	-------	----------------

[작성요령] 1.납부보험료는 1,000원 미만을 절사함 (최저금액은 100,000원) 2.부보대상제외책임준비금의 잔액은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와 관련된 책임 준비금의 잔액임(단,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산출하지 않음)
작성자 직위 성명 연락처

표 45

※첨부 : 보험종목별 책임준비금의 잔액이 기재된 사업년도말 자료

<별지 제 2호 서식>

보험료산정표(손해보험회사)

(연도)

보험회사 (인)

●납부보험료 : 원 ●부보대상책임준비금의 잔액 (단위 : 원)				
보험종목	규정 제3조 제4호상 책임준비금잔액①	부보대상제외 책임준비금잔액②		부보대상 책임준비금잔액(①-②)
		부보대상제외 계약자 책임준비금잔액	기타부보대상제외 책임준비금잔액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해외원보험 장기 개인연금				
합계				a

●보험료율 (단위 : 원)		
연간보유보험료총액(A)	보험계약자잉여금(B)	보험료(b)(
주:1.보험료율=표준비율(15/10,000)-[5-A/B]*1/3]*(표준비율*5/100) 2.보험료율 : 최고 15/10,000. 최저 14.25/10,000(단,10년 미만 보험회사는 15.75/10,000)		

●당해사업년도 보험료 (단위 : 원)

부보대상책임준비금잔액a	보험료율b	당해사업년도보험료(a*b)
[작성요령] 1.납부보험료는 1,000원 미만을 절사함(최저금액은 100,000원) 2.부보대상제외 계약자 책임준비금의 잔액은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 6호와 관련된 책임준비금의 잔액임(단,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산출하지 않음) 3.기타부보대상제외책임준비금의 잔액은 1998년 8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보험 계약과 관련된 책임준비금의 잔액임.		
작성자 직위 성명 연락처		

※첨부 : 보험종목별 책임준비금의 잔액이 기재된 사업년도말 자료

■ 은행의 보험료 납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보대상예금”이라 함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예금등을 말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부보대상예금의 범위)

부보대상예금은 은행이 예금,적금,부금등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과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제외한다.

1.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
2. 양도성 예금
3. 개발신탁
4. 채권신탁
5.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7.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8. 다른 부보금융기관

제2장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제5조 (보험료의 산정단위)

보험료는 분기별(1~3월,4~6월,7~9월,10~12월)로 산정한다

제6조 (보험료의 산정)

①은행은 분기별 보험료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다만,산정대상기간이 분기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분기별 보험료=부보대상예금의 분기별 평균잔액×5/10,000×1/4

②은행이 납부하는 연간 최저보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③은행은 당해연도 4/4분기분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 당해분기 보험료를 포함한 연간 보험료의 합계가 10만원보다 적을 경우 10만원에서 당해연도 보험료로 기납부한 보험료를 차감 한 금액을 4/4분기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은행은 분기별 보험료를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기한으로 한다.

제8조 (보험료의 납부방법)

①은행은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어음교환을 이용하여 공사가 수납하도록 요청하거나,현금,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이체(지준이체포함)의 방법으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는 “천원”미만을 철사한다.

제3장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제9조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①은행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정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익월 20일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보험료 산정자료외에 보험료산정과 관련하여 공사의 사장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료 산정자료)

①보험료 산정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보험료산정표<별지 제1호 서식>

2. 분기평잔대차대조표

-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산정표의 서식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사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과납 또는 미납 보험료의 처리

제11조 (과납보험료의 처리)

- ① 보험료를 과납한 은행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납한 보험료를 정산한다.

제12조 (미납보험료의 처리)

은행이 제7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와 부족하게 납부한 보험료(이하 “미납보험료”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 1. 은행은 미납보험료와 제13조에서 정한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은행은 제1호의 금액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 후 그 납부명세를 문서로써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체료)

- ① 연체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연체료 = 미납보험료 × 연체이자율 × 납부지연일수 / 365
- ② 연체이자율은 보험료 납부기일 현재의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평균 연체이자율로 한다.
- ③ 납부지연일수는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미납 보험료의 납부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 ④ 연체료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합병등에 다른 보험료 납부

제14조 (다른 은행과 합병등의 보험료 납부등)

- ① 은행이 다른 은행과 합병한 경우 신설되는 은행(이하 “신설은행”이라 한다) 또는 존속하는 은행(이하 “존속은행”이라 한다)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신설은행 또는 존속은행은 합병전후의 은행별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자료를 작성한다.
- 2.신설은행 또는 존속은행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험료 산정자료를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공사 제출하여야 한다.
- 3.신설은행 또는 존속은행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의 합계액을 제7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은행이 계약이전 또는 영업양도등으로 인하여 다른 은행에게 예금등을 이전하고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예금등을 이전하는 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예금등을 이전받는 은행이 납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보험료 납부기한등의 연장)

- ①합병으로 소멸하는 은행 또는 예금등을 이전하는 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관련하여 신설은행, 존속은행 또는 예금등을 이전받는 은행은 예금등의 승계 또는 이전절차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당해 보험료에 대한 납부 및 산정자료의 제출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동 기한의 연장을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당해 은행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6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보험료 납부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제1항제4호라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중앙회는 중앙회와 조합의 제10조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정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2.중앙회는 조합별로 보험료를 납부받아 중앙회의 보험료와 함께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3.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4호라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진입

또는 퇴출하는 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보험료 납부)

은행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2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의 보험료 납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대표하는 지점 또는 대리점이 국내은행의 본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보대상예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보대상예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3조 (보험료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은행이 종전 보험료수납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공사가 어음교환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공사에 의뢰한 경우에는 이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이 공사가 보험료를 수납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1998년 2/4분기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2/4분기 보험료 납부는 종전의 보험료수납규정에 따른다.

제5조 (1998년 3/4분기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 : (부보대상예금의 분기별 평균잔액 $\times 3/10,000 \times 1/4 \times 24\text{일}/92\text{일}$) + (부보대상예금의 분기별 평균잔액 $\times 5/10,000 \times 1/4 \times 68\text{일}/92\text{일}$)

■ 종합금융회사의 보험료 납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호가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의 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험료의 납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보대상예금”이라 함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예금등을 말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부보대상예금의 범위)

부보대상예금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제외한다 <개정 98.12.18.>

- 1.삭제<98.12.18>
- 2.삭제<98.12.18>
- 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4.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5.다른 부보금융기관

제2장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제5조 (보험료의 산정단위)보험료는 사업년도 단위로 산정한다.

제6조 (보험료의 산정)

①종합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다음의 산실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대상기간이 사업년도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text{보험료} = \text{부보대상예금의 연평균잔액} \times 15 / 10,0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제7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종합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공사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월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기한으로 한다.

제8조 (보험료의 납부방법)

①종합금융회사는 보험료를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이체(지준이체 포함)의 방법으로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는 “천원”미만을 절사한다.

제3장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제9조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

①종합금융회사는 제10조에서 정하는 보험료 산정자료를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보험료 산정자료외에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공사의 사장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료 산정자료)

① 보험료 산정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료산정표

2.대차대조표등 가중평균잔액이 기재된 사업년도말 자료

②제1항제1호에서 정한 보험료산정표의 서식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사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과납 또는 미납보험료의 처리

제11조 (과납보험료의 처리)

①보험료를 과납한 종합금융회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납한 보험료를 정산한다.

제12조 (미납보험료의 처리)

종합금융회사가 제7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와 부족하게 납부한 보험료(이하 “미납보험료”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 1.종합금융회사는 미납보험료와 제13조에서 정한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2.종합금융회사는 제1호의 금액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 후 그 납부명세를 문서로써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체료)

- ①연체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연체료=미납보험료×연체이자율×납부지연일수/365일

- ②연체이자율은 보험료 납부기일 현재의 법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평균 연체이자율로 한다.
- ③납부지연일수는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미납보험료의 납부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 ④연체료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합병등에 따른 보험료 납부

제14조 (다른 종합금융회사와 합병등의 경우 보험료 납부등)

- ①종합금융회사가 다른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경우 신설되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신설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또는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이하 “존속종합금융회사”라 한다)의 보험료납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신설종합금융회사 또는 존속종합금융회사는 합병전후의 종합금융회사별로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산정자료를 작성한다.
- 2.신설종합금융회사 또는 존속종합금융회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험료산정자료를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전 또는 영업양도등으로 인하여 다른 종합금융회사에게 예금등을 이전하고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예금등을 이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할 보험료는 예금등을 이전받는 종합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보험료 납부기한등의 연장)

- ① 합병으로 소멸하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예금등을 이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관련하여 신설종합금융회사, 존속종합금융회사 또는 예금등을 이전받는 종합금융회사는 예금등의 승계 또는 이전 절차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당해 보험료에 대한 납부 및 산정자료의 제출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동 기한의 연장을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기한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산정자료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 ① 신용관리기금의 기본재산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이 출연금과 관련하여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 ② 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출연금과 관련하여 신용관리기금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금융회사가 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년도 종료후 신용관리 기금에 납부한 출연금은 이 규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제4조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등)

- ①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계산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다.
- ②제1항의 경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는 이 규정 시행후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 산정 자료는 이 규정 시행을 1우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보험료는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1>의 산식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한다.

보험료=중전규정에 의한 부보대상예금의 평균잔액('98.4.1 ~ '98.9.15)×168일/365일 ×보험료율(7.24이전 : 0.12%, 7.25이후 : 0.15%)+ 개정규정에 의한 부보대상예금의 평균잔액('98.9.16 ~ '99.3.31)×197일/365일×보험료율

제3조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대한 경과조치)

1998.9.30.이전에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보대상 예금으로 본다.

<별표1>

사업년도별 보험료의 계산

1.1997사업년도

- 부보대상예금의 연평균잔액×8/10,000×232일/365일+ 부보대상예금의 연평균잔액×12/10,000×133일/365일

2.1998사업년도

- 부보대상예금의 연평균잔액×12/10,000×115일/365일+ 부보대상예금의 연평균잔액×15/10,000×250일/365일

<별지 제1호 서식>

보험료 산정표
(년도)

종합금융회사(인)

●납부보험료 : 원 ●부보대상예금 평균잔액 (단위 : 원)
--

계정과목	대차대조표상 평균잔액①	부보대상제외예금평균잔액②		부보대상예금평균잔액 (①-②)
		부보대상제외예금자예금평균잔액	기타부보대상제외예금평균잔액	
발행어음				
표지어음				
담보부매출어음				
CMA예탁금				
				㉞

●당해사업년도 보험료 (단위 : 원)

부보대상예금평균잔액㉞	보험요율㉟	당해분기보험료(㉞*㉟)

[작성요령] 1. 납부보험료는 1,000원 미만을 절사함(최저금액은 100,000원) 2. 부보대상제외예금자예금평균잔액은 제4조제3호 내지 제5호로부터 조달한 금전을 대상으로 산출 (단,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산출하지 않음) 3. '98.10.1 이후 매출하는 담보부매출어음은 기타부보대상 제외예금에 해당 4. 기타부보대상제외 예금평균잔액은 대차대조표상 가액과 실제 조달한 금전과의 차액을 대상으로 산출 작성자 직위 성명 연락처
--

※첨 부 : 기중평균잔액이 기재된 사업년도말 자료

[附錄 3] 保險會社 支給餘力 基準 (主要 改正內容: '99. 5월)

□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

1. 지급여력기준의 강화

- 일반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을 보험종목별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일반종목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 (EU방식 준용)
- 장기손해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을 책임준비금의 1%에서 4%로 강화하고 장기보험의 보험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을 마련(생명보험 및 EU방식 준용)

지급여력 기준

□ 지급여력기준 = 일반보험 +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

- 일반보험 (다음 중 큰 값)

- 1년간 보유보험료 × 보험료기준 비율(17.8%)
- 3년평균 보험금(발생손해액) × 보험금기준 비율(25.2%)

- 장기보험 (다음 중 큰 값)

- 장기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 장기보험 1년간 보유위험보험료 × 보험료기준 비율(17.8%)
- 장기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 장기보험 3년평균 발생손해액 × 보험금기준 비율(25.2%)

- 개정안에 의한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기준 변화('99. 3월말)

(단위 : 억원, %, %p)

구 분	현 행	개정안	차 이	구 성 비	
지 급 여 력(A)	29,787	29,010	△777		
지급여력 기 준	일 반	10,107	10,387	280	8.6
	장 기	1,523	4,486	2,963	91.4
	계(B)	11,630	14,873	3,243	100.0
비 율(A/B)	256.1	195.0	△61.1		

주) 11개 일반 원수사 기준임

- 개정안에 의하면 지급여력기준이 총 3,243억원이 증가하고 지급여력은 777억원이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이 195.0%로 현행 256.1%에 비하여 61.1%p 하락(23.9%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은 2,963억원 증가함으로써 전체지급여력기준 증가액 3,243억원의 91.4%를 차지 지급여력제도 강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2. 지급여력항목 조정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 자본조정항목 추가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을 지급여력에 산입
- 차감항목을 개정하여 “무형자산”을 지급여력에서 공제

3. 조치기준의 변경

- 현행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부족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치하고 있는 것을,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시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3단계 조치토록 변경

현 행			개 정 안		
지급여력 부족비율 에 따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미만 ▪0 ~ 50% ▪50 ~ 100% ▪100%초과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지급여력 비율에 따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초과 ▪50 ~ 100% ▪0 ~ 50% ▪0%미만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4. 경영정상화 대상회사(2개사)에 대한 적용 유예

- 금감위에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계획이행기간까지는 개정안의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적기시정조치의 적용 유예

-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 개정요약 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지급 여력	합산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신 설) ▪(신 설) ▪후순위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자본조정 ▪(좌 동) 				
	차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계약비 ▪자기주식 ▪자본의 50%이상이 잠식된 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선급비용 ▪퇴직금총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해당 부실액이 대손충당금 초과 금액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삭 제) ▪(삭 제) ▪(좌 동) ▪(삭 제) ▪(삭 제) ▪무형자산 				
지급여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보험 종목별 지급여력기준 + 책임준비금의 1% + 해외 출재보험료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보험지급여력기준 + 장기보험책임준비금의 4% + 장기위험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 				
지급여력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적기시정 조 치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0%미만 ▪0 ~ 50% ▪50 ~ 100% ▪100%초과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0%미만 ▪0 ~ 50% ▪50 ~ 100% ▪100%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초과 ▪50 ~ 100% ▪0 ~ 50% ▪0%미만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초과 ▪50 ~ 100% ▪0 ~ 50% ▪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0%미만 ▪0 ~ 50% ▪50 ~ 100% ▪100%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초과 ▪50 ~ 100% ▪0 ~ 50% ▪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 생명보험 지급여력제도

1. 지급여력 확보기준의 강화

- 현행 “0(零)”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토록 하고 있는 기준을 지급여력기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 책임준비금 위험계수(=4.0%)의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 이상의 지급여력을 확보토록 강화

2. 지급여력기준의 변경

- “7년상각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을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 책임준비금위험계수(= 4.0%)의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로 변경
(※ 보험위험계수는 회사별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정비율은 향후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3. 단계별 일정 제시

- 지급여력확보기준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2004년 3월부터는 EU의 지급여력수준인 「책임준비금 × 4% + 위험보험금 × 0.3%」의 지급여력을 확보토록 기준 제시

※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 산출방식 및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제25조제2항제2호)

일반상품		금리연동형상품
보험가입금액(①) - 책임준비금	+	일반사망보험금액(②) (책임준비금 미포함)

* 보험위험계수(제25조제2항제2호)

$\text{위험보험료/보험가입금액(①+②)} \times \sum_{\text{위험}} \{ (\text{위험별})\text{보험금지급율} \times (\text{위험별})\text{보험금점유율} \times (\text{위험별})\text{자기부담율} \}$

- 주) 1. 위험은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장해, 질병/입원으로 구분하며, 보험금지급율과 보험금점유율 및 자기부담율은 위험별로 산출하여 적용
 2. 위험보험료 : 직전 1년간 수입된 위험보험료(재보험 출재전)
 3. 지급보험금 : 직전 1년간 발생된 위험에 대한 지급보험금(수입재보험금 수령전, 소멸계약의 책임준비금 미차감)
 4. 보험금지급율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
 5. 보험금점유율은 지급보험금중 각 위험이 차지하는 지급보험금의 점유비율
 6. 자기부담율 : (지급보험금 - 수입재보험금) / 지급보험금

* 단계별 소정비율

구 분	소정비율	구 분	소정비율
1999. 9월말	6.25%	2002. 3월말	50.00%
2000. 3월말	12.50%	2002. 9월말	62.50%
2000. 9월말	18.75%	2003. 3월말	75.00%
2001. 3월말	25.00%	2003. 9월말	87.50%
2001. 9월말	37.50%	2004. 3월말이후	100.00%

주)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퇴직보험 및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은 제25조제2항의 지급여력기준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4. 지급여력구성항목 조정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만 지급여력에 산입
- 보완자본 성격인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을 지급여력에 산입
- 자본조정을 지급여력에 산입
- 차감항목을 신설하여 “무형자산중 영업권”과 “신계약비”를 지급여력에서 공제

5. 조치기준의 변경

- 현행 지급여력비율 0% 미만시 부족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치하고 있는 것을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시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3단계 조치토록 변경
(※ 현행 경영개선명령 수준은 지급여력부족비율이 20%이상일때로서 책임준비금의 20%를 잠식할 때이나 개선안의 경우 자본완전 잠식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경영정상화 대상회사에 대한 특례

- 1998년 8월 금감위가 승인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회사에 대하여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2000년 9월 30일까지 개정안의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적기시정조치의 적용 유예

- 생명보험 지급여력제도 개정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지급 여력	구성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해약식 초과 보험료적립금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신 설) ▪대손충당금 ▪97조 준비금 ▪(신 설) ▪후순위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좌 동) ▪(좌 동)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삭 제) ▪자본조정 ▪(좌 동) 	
	차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계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계약비 ▪무형자산중 영업권 	
지급여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년상각 해약식책임준비금의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책임준비금위험계수(=4%)의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 ※ 소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지급여력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여력금액 / 7년상각 해약식책임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여력금액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책임준비금위험계수(=4%)의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초과 ▪△10 ~ 0% ▪△20 ~ △10% ▪△2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초과 ▪50 ~ 100% ▪0 ~ 50% ▪0%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조치 (감독규정)

<손해보험사업자>

제32조의2(경영개선권고) ①감독원장은 손해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개정 99. 6. 25>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8. 요율조정권고
9.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10.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 3. 26]

제32조의3(경영개선요구) ①감독원장은 손해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당해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0%이상 50%미만인 경우<개정 99. 6. 25>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사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재보험처리
6. 합병, 제3자 인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계획 수립
7. 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8. 자회사의 정리
9. 제32조의2제2항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전문개정 99. 3. 26]

제32조의4(경영개선명령) ①금감위는 손해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0%미만인 경우<개정 99. 6.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사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보험관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보험사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합병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사업의 인수
7.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32조의3제2항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전문개정 99. 3. 26]

제32조의5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제32조의2 또는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는 감독원장에게,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는 금감위에 당해 조치일로 부터 각각 2월 이내에 당해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②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원장이,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③감독원장은 제32조의2 또는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즉시 해당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손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고 제32조의2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제32조의3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32조의3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동 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고 제32조의3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감위에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⑤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손해보험사업자는 매분기말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제32조의6(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 ①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금감위가 정한다.

④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이 만료된 손해보험사업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을 초과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는 감독원장이,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원장이,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은 금감위가 당초의 조치가 만료되었음을 해당 손해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손해보험사업자가 이행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 3. 26>

제32조의7(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 점검결과 당해 손해보험사업자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1.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개정 99. 3. 26>
2. 제32조의3의 규정 등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촉구.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 3. 26>
3. 제2호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에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의 건의 <개정 99. 3. 26>

②금감위는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1. 보험사업의 전부정지 <개정 99. 3. 26>

2.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당해 보험사업자의 허가취소 요청
3. 기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2조8(경영개선권고 등의 유예 및 완화·면제) ①감독원장은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거나 경영개선권고 등의 대상이 되는 손해보험사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권고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권고 등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유예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유예는 금감위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완화·면제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손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완화·면제는 금감위에 건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3. 26]

<생명보험사업자>

제28조(경영개선권고) ①감독원장은 생명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개정 99. 5. 21>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 이상으로서 지급여력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사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합병, 제3자 인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계획 수립
 6. 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의 정리
 8. 제28조제2항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 [전문개정 99. 3. 26]

제28조의2(경영개선요구) ①감독원장은 생명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당해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0%이상 50%미만인 경우
<개정 99. 5. 21>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제28조의3(경영개선명령) ①금감위는 생명보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0%미만인 경우<개정 99. 5. 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사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보험관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보험사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합병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사업의 인수
7.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28조의2제2항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전문개정 99. 3. 26]

제29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제28조 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는 감독원장에게,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는 금감위에 당해 조치일로부터 각각 2월 이내에 당해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원장이,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감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③감독원장은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즉시 해당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④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생명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고 제28조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28조의2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동 계획의 승인을 거부하고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감위에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⑤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생명보험사업자는 매분기말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생명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제29조의2(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

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은 금감위가 정한다.

④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한이 만료된 생명보험사업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초과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는 감독원장이,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원장이,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은 금감위가 당초의 조치가 만료되었음을 해당 생명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생명보험사업자가 이행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 3. 26>

제29조의3(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 점검결과 당해 생명보험사업자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3. 26>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개정 99. 3. 26>
2. 제28조의2의 규정 등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경영개선계획 이행 촉구.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 3. 26>
3. 제2호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는 금감위에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의 건의 <개정 99. 3. 26>

②금감위는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 3. 26>

1. 보험사업의 전부정지 <개정 99. 3. 26>
2.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당해 보험사업자의 허가취소 요청
3. 기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9조4(경영개선권고 등의 유예 및 완화·면제) ①감독원장은 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거나 경영개선권고 등의 대상이 되는 생명보험사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권고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권고 등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한 유예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한 유예는 금감위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한 완화·면제는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한 완화·면제는 금감위에 건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 3. 26]

[附錄 4] 保險會社 經營實態評價

<감독규정>

제 2-2절 경영실태평가 등 건전성 감독 (신설 98.12.11)

제34조의2(경영실태평가) ①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협)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99. 3. 26>

④제1항의 의한 경영실태평가방법 및 평가등급의 설정 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독규정세칙>

제55조의3(경영실태평가) ①감독규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검사 등을 통하여 별표 제5-2호에서 정하는 평가항목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별표 제5-2호중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별표 제5-2호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은 별표 제5-3호와 같다.

④경영실태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보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평가는 지급여력·자산건전성·경영관리·수익성·유동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지급여력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경영실태평가의 평가등급은 1등급(우수),2등급(양호),3등급(보통),4등급(취약), 5등급(위협)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등급별 정의는 별표 제5-4호와 같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별표 제5-2호에서 정하는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를 통한 경영실태평가후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크게 악화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평가대상 보험사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당해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⑧별표 제5-2호의 평가항목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계량평가항목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98. 12. 24]

<별표 제5-2호>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생명보험

평가부문	계량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여력 비율 I (20점) ▪지급여력 비율 II(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산 건전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자산비율(10점) ▪위험가중자산비율(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능력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법규준수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예정이율 대 총자산수익율 (5점)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5점) ▪예정사업비 대 총실제사업비 비율(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이원별 손익관리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 비율(7.5점) ▪수지차비율(7.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기타 경영실태평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손해보험

평가부문	계량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지급여력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여력 비율 I (20점) ▪지급여력 비율 II(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산 건전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자산비율(10점) ▪위험가중자산비율(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부실자산 관리능력 ▪여신관리의 적정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경영관리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능력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법규준수 ▪기타 경영실태평가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해율(5점) ▪순사업비율(5점) ▪운용자산수익율(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손해율 관리 적정성 및 합리성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기타 경영실태평가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자산 비율(7.5점) ▪현금수지차비율(7.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관리능력 ▪기타 경영실태평가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표 제5-3호>

- 계량평가항목의 산정기준

1. 지급여력

가. 지급여력비율 I (생보·손보)

(1) 산식 : $(\text{지급여력} / \text{지급여력기기준}) \times 100$

(2) 산정방식

- 생명보험은 감독규정 제25조, 손해보험은 동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함.

나. 지급여력비율 II (생보·손보)

(1) 산식 : $(\text{지급여력} / \text{지급여력기기준}) \times 100$

(2) 산정방식

- 수정지급여력 = “지급여력비율 I”의 지급여력에서 후순위차입금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전성

가. 부실자산비율 (생보·손보)

(1) 산식 : $(\text{가중부실자산} / \text{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times 100$

(2) 산정방식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 이 세칙 <별지 제9-2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건전성분류대상이 되는 자산

-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중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분류자산의 20%, 회수의문분류자산의 7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나. 위험가중자산비율 (생보·손보)

(1) 산식 : $(\text{위험가중자산} / \text{총자산}) \times 100$

(2) 산정방식

- 위험가중자산은 총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

3. 수익성

가.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수익율 (생보)

(1) 산식 : $(\text{총자산수익률} / \text{평균예정이율}) \times 100$

(2) 산정방식

- 평균예정이율 = $\frac{\text{당기말책임준비금적수} + \text{전기말책임준비금적수}}{\text{당기말책임준비금} + \text{전기말책임준비금}} \times 100$

◦ 책임준비금 = 해약환급금식책임준비금 - 지급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책임준비금적수 = 예정이율 × 책임준비금

- 총자산수익율 = (투자수익/경과총자산) × 100

◦ 경과총자산 = (당기말 총자산+ 전기말 총자산-투자수익) ÷ 2

◦ 투자수익 = 총자산 운용수입 - 총자산 운용비용

◦ 총자산 운용수입 = 수입이자 + 수입배당금 + 수입임대료 + 투자수입수수료 +
유가증권평가이익 + 유가증권처분이익 + 유형자산평가이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금전신탁이익

◦ 총자산 운용비용 = 감가상각비 + 대손상각비 + 유가증권평가손실+ 유가증권처
분손실 + 유형자산평가손실 + 유형자산처분손실 + 이자비용
+ 할인료

나.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생보)

(1) 산식 : (사망보험금 / 위험보험료) × 100

(2) 산정방식 :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상해보험금, 입원보험금, 관련지급비금
증감의 합계 금액임

다. 예정사업비 대 총실제사업비 비율 (생보)

(1) 산식 : (총실제사업비 / 예정사업비) × 100

(2) 산정방식 : 총실제사업비는 사업비와 재산관리비를 합제한 금액임

라. 손해율 (손보)

(1) 산식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 100

(2) 산정방식 : 일반, 자동차, 장기보험으로 구분하여 직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마. 순사업비율 (손보)

(1) 산식 : (사업비 / 경과보험료) × 100

(2) 산정방식 : 사업비는 순사업비와 재산관리비를 합제한 금액임

바. 운용자산수익율 (손보)

(1) 산식 : $(\text{순투자수익} / \text{경과운용자산}) \times 100$

(2) 산정방식

- 순투자수익 = 투자수익 - 투자비용

- 경과운용자산 = (기초운용자산 + 기말운용자산 - 순투자수익) ÷ 2

4. 유동성

가. 유동성비율 (생보·손보)

(1) 산식 : $(\text{유동성자산} / \text{총자산}) \times 100$

(2) 산정방식

- 유동성자산 : 다음의 자산을 합제한 금액을 말함

◦ 현금

◦ 당좌예금, 보통예금

◦ CD, CMA, MMDA, RP, 콜론

◦ 상품유가증권 중 주식·채권(후순위채 제외)·수익증권

◦ 기타 위의 자산과 그 성격 및 운용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산

나. 수지차비율 (생보)

(1) 산식 : $(\text{총수지차} / \text{지급보험금}) \times 100$

(2) 산정방식

- 총수지차 : 보험수지차 + 투자수지차 + 기타수지차

- 지급보험금 : 평가기간 동안의 지급보험금 누계액

다. 현금수지차비율 (손보)

(1) 산식 : $(\text{현금수지차} / \text{보유보험료}) \times 100$

(2) 산정방식

- 현금수지차 : 보험영업수지차(보유보험료-손보험금-장기환급금-사업비) + 보험영업외수지차(투자영업수지차+ 영업외수지차+ 특별손익) - 보험미수금 증가액 + 보험미지급금증가액

· 사업비 = 순사업비-(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전입액+ 대손상각비+ 신계약비상각비)

·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손익±유가증권평가손익+ 부동산감가상각비

· 영업외수지차 = 영업외손익±외화평가손익-대손충당금환입

(별표 제5-4호) <신설 98.12.24>

- 각 평가등급별 정의

1. 지급여력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지급여력이 충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지급여력은 적정하나 지급여력비율이 1등급의 경우보다 나쁨
3등급	지급여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등급	지급여력 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남
5등급	지급여력이 크게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긴급자금 지원이 요구됨

2.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자산이 건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자산이 건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를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 보다 낮음
3등급	여건이 악화되면 장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등급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있음
5등급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회사 존립이 위태로움

3. 경영관리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경영관리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경영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등급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여건변화에 따라 업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음
3등급	경영관리능력은 보통 수준이나 상황대처능력이 약간 부족함
4등급	경영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5등급	경영관리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교체가 요구됨

4. 수익성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수익이 손실보전을 위한 충당금적립 및 회사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에 충분하여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수익이 손실보전을 위한 충당금적립 및 회사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에 충분하지만 수익률이 감소추세를 보임
3등급	수익이 손실보전을 위한 충당금적립 및 회사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에 충분치 않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하여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4등급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감소추세를 보임
5등급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기자본의 감소를 초래함

5. 유동성

평가등급	정 의
1등급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감독상 최소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높음
3등급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4등급	유동성 부족이 심각함
5등급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 존립이 위태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7. 종합평가등급의 정의

평가등급	정의
1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짐 ◦ 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함 ◦ 외부의 금융·경제적 불안요인 및 비정상적인 영업여건에 대한 적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으로 경영이 건전하나 해결가능한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음 ◦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회사 경영에 대한 부분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제한된 감독이 요구됨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 업무수행 및 규정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음 ◦ 불리한 영업여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취약점 시정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영상태가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법규정 위반사례가 많음 ◦ 그러나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 취약점 시정을 위한 통상적인 수준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4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거나 경영상 심각한 취약점들이 여러부문에 걸쳐 많이 나타남 ◦ 시정되기 어려운 주요 문제점들이 많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효율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장래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음 ◦ 다만, 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위한 명확한 계획이 요구됨
5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음(4등급보다 더욱 악화) ◦ 경영부실 정도와 규모가 매우 심각하여 주주 또는 기타 재원으로부터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함 -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계약이전, 청산, 인수·합병 등의 조치가 요구됨

[附錄 5] 美國의 州別 保險保證基金

<손해보험>

(단위 : 만\$)

州	설립 연도	급부최고 한도①	근재보험 전액보장②	회수/면책 (순자산)③	계정수④ (Account)	부과금 한도⑤	공제 조항⑥
Alabama	1981	15*	전액	없음	3	1% ^a	P
Alaska	1970	50*	전액	없음	3	2% ^a	R&P
Arizona	1977	10*	SF	없음	2	1% ^a	P
Arkansas	1977	30	N ⁷	5,000	1	2% ^p	P
California	1969	50	전액	없음	3	1% ^a	S
Colorado	1971	10*	전액	5,000	3	1% ^a	R&P
Connecticut	1971	30*	전액	5,000	3	2% ^a	R&P
Delaware	1970	30	전액	5,000	1	2% ^p	P/R&P
D. of C.	1973	30	전액	5,000	3	2% ^a	R&P
Florida	1970	30*	SF	없음	3	1% ^a	R&P
Georgia	1970	10	전액	300	3	2% ^a	R&P
Hawaii	1971	30	전액	5,000	1	2% ^p	S
Idaho	1970	30	전액	없음	3	1% ^a	R&P
Illinois	1971	30	전액	25,000	2	1% ^a	R&P
Indiana	1972	10/30	N ⁷	500/5,000	3	1% ^a	P/R&P
Iowa	1970	30*	전액	없음	1	2% ^p	R&P
Kansas	1970	30*	전액	없음	1	2% ^p	P/R&P
Kentucky	1972	30	전액	25,000	1	2% ^p	R&P
Louisiana	1970	15*/30	전액	없음	1	2% ^p	P
Maine	1970	30	전액	없음	3	2% ^a	R&P
Maryland	1971	30*/100 ^{bond}	전액	50,000	4	2% ^a	R&P
Massachusetts	1971	30	전액	없음	1	2% ^p	R&P
Michigan	1969	0.05% ^{wp*}	전액 ⁸	1% ^p	5	1% ^p	R&P
Minnesota	1971	30*	전액	25,000	5	2% ^a	P
Mississippi	1970	30*	전액	없음	1	1% ^p	R&P

① * 보증기금 지급시 \$10 ~ \$250 수준의 일정금액 공제(Deductible) 적용

② <N7>급부금 최고한도내, <전액8>일정금액 공제 <SF>saparate state fund에서 보전

③ 부유한 계약자 및 법인에 대한 회수 및 면책조항의 기준으로 순자산기준 금액

④ 보증기금내 분리계정수 : 대부분 자동차,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기타

⑤ 원수보험료기준, <a> 각 계정별 보험료 기준, <p> 총보험료 기준

⑥ 보증기금 회수방법 : <p> 보험료세 공제, <s> 추가 부가보험료부과, <r&p> 보험료를 인상 및 추가 부가보험료 부과

州	설립 연도	급부최고 한도①	근재보험 전액보장②	회수/면책 (순자산)③	계정수④ (Account)	부과금 한도⑤	공제 조항⑥
Missouri	1971	30*	전액	25,000	4	1% ^a	P
Montana	1971	30*	전액	50,000	1	2% ^p	R&P
Nebraska	1971	30*	전액	없음	3	1% ^a	P
Nevada	1971	30*	SF	없음	1	2% ^p	P
New Hampshire	1970	30*	전액	없음	3	2% ^p	R&P
New Jersey	1974	30* (7.5 ^{auto claim})	SF	없음	1	2% ^p	S
New Maxico	1973	10*	전액	없음	3	2% ^a	R&P
New York	1969	100, 500 ^{policy}	SF	없음	1	사전	R&P/ 0.5% ^{p/q}
North Carloina	1971	30*	전액	50,000	3	2% ^a	R&P
North Dakota	1971	30*	SF	없음	1	2% ^p	R&P
Ohio	1970	30	SF	50,000	2	1.5% ^a	R&P
Oklahoma	1980	15	전액	50,000	3	2% ^a / 1% ^{PHS}	R&P
Oregon	1971	30	전액	없음	1	2% ^p	P
Pennsylvania	1970	30	SF	1 st pty 500 / 3 rd pty 50,000	2	2% ^a	R&P
Puerto Rico	1974	15	전액 ^{7/8}	없음	2	2% ^a	R&P
Rhode Island	1970	30	전액	50,000	3	2% ^a	R&P
South Carolina	1971	30*	전액	없음	4	1% ^a	R&P
South Dakota	1970	30*	전액	50,000	3	1% ^a	R&P
Tennessee	1971	10*	전액	없음	2	1% ^a	P
Texas	1971	30	전액	50,000	4	2% ^{line} /2% ^p	P
Uta	1971	30*	전액	50,000	3	2% ^a	P
Vermont	1970	30	전액	없음	3	2% ^a	R&P
Virginia	1970	30	전액	50,000	3	2% ^a	P
Washington	1971	30*	SF	없음	2	2% ^a	P
West Virginia	1970	30*	SF	없음	2	2% ^a	R&P
Wisconsin	1969	30*	전액 ⁸	10,000	6	2% ^a	R&P
Wyoming	1971	15*	SF	없음	1	1% ^p	R&P

<생명보험>

(단위 : 만\$)

州	설립 연도	사망 급부금	해약 환급금	연금	건강&장해	보전금 총액①	비할당 연금②	부과금 한도③	공제 조항④
Alabama	1983	-	10	10	-	30	제외	1%	PTO*
Alaska	1990	30	10	10	10	30	500 ^c	2%	없음
Arizona	1977	-	10	10	-	30	NS	2%	PTO
Arkansas	1989	10	10	10	10	30	100 ^c	2%	PTO*
California	1991	25	10	10	20	30	제외	1%	SUR
Colorado	1991	30	10	10	10	30	제외	1%	PTO*
Conneticut	1972	30	10	10	30	30	500 ^c	2%	PTO
Delaware	1982	30	10	10	10	30	100 ^c	2%	PTO*
D of C	1992	30	10	10	10	30	제외	2%	PTO
Florida	1979		10	10		30	NS	1%	PTO*
Georgia	1981		10	10		30	500 ^c	2%	PTO
Hawaii	1979	30	10	10	10	30	제외	2%	PTO*
Idaho	1977		10	10		30	제외	2%	PTO*
Illinois	1980	10	10	10	30	30	500 ^c	2%	PTO
Indiana	1978		10	10		30	500 ^c	2%	PTO
Iowa	1987		10	10		30	500 ^c	2%	PTO
Kansas	1972	30	10	10	10	30	제외	2%	PTO*
Kentucky	1978	30	10	10	10	30	제외	2%	PTO*
Louisiana	1991	10	10	10	10	30	제외	2%	PTO*
Maine	1984		10			30	30	2%	없음
Maryland	1971	30	10	10	30		제외	2%	없음
Massachuserts	1986	30	10	10	10	30	제외	2%	PTO*
Michigan	1982	30	10	10	10	30	500 ^c	2%	PTO*
Minnesota	1977	30	10	10 /30 ^{ss}	30	30	500 ^p	2%	PTO
Mississippi	1985	30	10	10	10	30	500 ^c	2%	PTO*
Missouri	1988	30	10	10	30	30	제외	2%	PTO*
Montana	1974	30	10	10	10	30	500 ^c	2%	PTO*
Nebraska	1975	30	10	10		30	NS	2%	PTO

① 계약건수에 관계없이 1계약자당 총 보전금 지급한도액

② 보증부투자계약(GICs) 등에 투자된 퇴직연금(pension fund)이 해당됨. <c>는 계약자 1인당 기준, <p> 계약당 기준, <NS>는 별도의 명시조항이 없는 경우임.

③ 연간 보증보험기금에서 보험사에게 할당할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

④ 보증기금 회수방법(recoupment) : <PTO> 보험료세 공제, <SUR> 추가 부가보험료 징수, 단 * 의 경우는 보증기금 전액에 대한 공제를 불허.

州	설립 연도	사망 급부급	해약 환급금	연금	건강& 장해	보전금 총액①	비할당 연금②	부과금 한도③	공제 조항④
Nevada	1973	30	10	10	10	30	제외	2%	PTO
New Hampshire	1971	30	10	10	10	30	500 ^c	2%	PTO
New Jersey	1991	50	10	50/ 10 ^{cash}	전액	50	200 ^c	2%	PTO*
New Maxico	1975	-	10	-	-	30	NS	2%	없음
New York	1941	-	-	-	-	50	100 ^c	2%	PTO*
North Carloina	1974	-	-	-	-	30	500 ^c	2%	PTO*
North Dakota	1983	10	10	10	10	30	500 ^c	2%	PTO*
Ohio	1989	30	10	10	10	30	100 ^c	2%	PTO*
Oklahoma	1981	30	10	30	30	30	제외	2%	PTO*
Oregon	1975	30	10	10	10	30	100 ^c	2%	PTO*
Pennsylvania	1979	30	10	30/ 10 ^{cash}	10	30	500 ^f	2%	PTO
Puerto Rico	1974	30	10	10	10	30	제외	2%	없음
Rhode Island	1985	30	10	10	10	30	500 ^c	3%	PTO*
South Carolina	1972	-	-	-	-	30	NS	4%	PTO
South Dakota	1989	30	10	10	10	30	제외	2%	PTO*
Tennessee	1989	30	10	10	10	30	제외	2%	PTO*
Texas	1973	30	10	10 (계약자)	20	-	500 ^c	1%	PTO*
Uta	1979	30	10	10	10	30	500 ^c	2%	PTO
Vermont	1972	30	10	10	30	30	100 ^c	2%	PTO
Virginia	1976	30	10	10	30	30	제외	2%	PTO
Washington	1971	50	50	50	50	50	500 ^c	2%	없음
West Virginia	1977	30	10	10	10	30/15	100 ^c	2%	없음
Wisconsin	1969	-	-	-	-	30	NS	2%	PTO
Wyoming	1990	10	10	10	30	30	제외	2%	PTO*

<참고문헌>

[국내문헌]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관련 법령집』, 1999.4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편람(안)』, 1999.2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1999
- 김기홍, 안종길, 최장봉, 『예금보호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6.4
- 김용우,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보험가입자보호」, 『생협』, 1998.7
- 보험감독원, 『주요국의 보험감독제도와 검사방향』, 1995.12
- 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 20년사』, 보험감독원, 1998.3
- 신용관리기금, 『최근 일본 예금보험제도의 주요 개편내용』 한국조세연구원, 1997.6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월호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월호
- 이상림,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불능예측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7
- 이재복,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연구조사자료 96-5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3
-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방안』, 1999.5
- 예금보험공사, 「미국 FDIC의 최소정비비용 기준」, 『조사정보』, 98-3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역할』 - 퇴출금융기관 부실원

- 인조사 및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1999.11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현황과 발전과제」, 세미나발표자료, 1999.12
- 재정경제위원회, 「예금자보호법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9.12
- 정봉은, 이승철,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9.7
- 정운찬, 『예금보험론』, 경제연구총서15,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2
- 정홍주, 「보험회사의 도산과 보험보증기금」, 『보험조사월보』, 보험감독원, 1991.7
- 조해균, 『최신 보험경영론』, 1994.4
- 최장봉, 가동수, 『우리나라와 BIS, 미국 및 일본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한국조세연구원, 1997.6
- 최장봉, 박경서,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6.7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월호

[외국문헌]

- ACLI, 『Life Insurance FACT BOOK』, 1998
- A.M.Best, "Best Insurance Report : (P/L) (L/H) on the Guaranty Fund", 1998
- David Foppert, "Can the State Guaranty Fund System Hold Up?", *Best's Review*, (L/H insurance edition), 1991. Oct.
- David Foppert, "Can the State Guaranty Fund System Hold Up?", *Best's Review*, (P/C insurance edition), 1991. Oct.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Property/Casualty Insurance FACT BOOK』, 1998

NAIC,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 *NAIC Model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1999.1

NAIC, "Post-Assessment Property and Liability Guaranty Association Model Act", *NAIC Model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1999.1

뉴욕주 보험감독청, *NEW YORK Insurance Law*, NILS Publishing Co. 1995

Kluwer Insurance, *Regulation of insurance in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1998.2

生命保險文化研究所(財團法人), 「生命保險支給保證基金に關する諸問題」, 『保險監督法研究會報告書[IV]』, 1994.11

日本 大藏省, 『保險業法,施行令,施行細則』, 1999.9

日本 大藏省, 『生命保險契約者保護機構 金融再生法 早期健全化法』, 1999.9

[Internet 자료]

<http://www.fsc.or.kr>

<http://www.kdic.or.kr>

<http://www.fdic.com>

<http://www.jdic.or.jn>

<http://www.cdic.or.cn>

<http://www.insure.com>

< 著 者 略 曆 >

李 昇 哲

西江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卒業 (經濟學碩士)
生命保險協會 保險經濟研究所 勤務 ('90 ~ '95年)
現 保險開發院 保險研究所 政策研究팀 前任研究員

정책연구자료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발 행 일	1999년 12월 일
발 행 인	박 성 옥
편 집 인	이 순 재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368-4000
인 쇄 소	대표전화

ISBN 89-88001-47-8 93320

定價 10,000원